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대상에
교육부장관 추가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051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대상에 교육부장관 추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1.
3. 회 부 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Ⅲ. 검토의견

1. 교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대상에 교육부장관 추가

개정안은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u>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u>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 ----- ----- ----- -----사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 ----- ----- -----. ----- ----- ----- ----- ----- ----- -----.
<신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현행	개정안
<신설> ② · ③ (생략)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2. 국가기관등의 장(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여성가족부장관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각급 학교 등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추진을 기대할 수 있겠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두텁게 하는 것으로 성폭력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 기대되므로 수용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50